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031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하여 2018. 10. 2. 이 법원 2018차전127735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10. 2.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6,328,801원 및 그 중 25,140,408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부인 D이 사망하자 D의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번 토지, 순번 2번 토지 중 191/231 지분, 순번 3, 4번 각 건물에 관하여 2019. 9. 4. 피고 앞으로 2017. 6. 12.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은 무자력이었다.

다. 피고는 2019.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된 2019. 9.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당시 C은 무자력이었으므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C은 무자력이었다. 한편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면, 일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것이고, C은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고의 특별기여분을 공제한 것이 상속재산이 되는데 상속개시 당시 D의 재산가액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고 따라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을 1 내지 4,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F와 혼인하였고, 자녀로 C(1969. 4.생, 아들), G(1973. 12.생, 딸), 피고(1980. 9.생, 딸), H(1980. 9.생, 딸), I(개명 전 J 1981. 11.생, 딸)를 두었는데 D은 2017. 6.경 사망하였다. D은 사망 전 약 10년 정도 당뇨합병증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다.

(나) D은 1987. 11.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5. 9.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3번 건물에 관하여, 1999. 8. 4. 순번 4번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원 정도였다.

(다) 자녀들 중 피고를 제외한 형제자매들은 모두 결혼을 하였으나, 피고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수 등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번 돈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D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다. 즉 ① 피고는 2010. 8.경부터 2017. 1.경까지 D의 병원비 등으로 65,098,248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부모가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있는 정수기 비데 등의 렌탈료로 834,49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4. 10.-11.경 D이 임차인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1300만 원을 부담하였고, ④ 2017. 3.경 D이 변제하여야 할 신용대출금 2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⑤ 2019.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59,983,405원을 변제하였다.

(라) D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피고가 2010.경부터 D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위와 같이

담보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외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장례식 당시 부의금을 피고가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①과 ② 금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을 뺀

54,943,948원(65,932,738원-65,932,738원×1/6, 민법 974조에 따라 D에 대한 부양의무자는

6명인바, 그 중 피고 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③ 13,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59,983,405원의 합계

147,927,353원(54,943,948원+13,000,000원+20,000,000원+59,983,405원)은 피고가

피상속인인 D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고가 특별히 부양한

특별기여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기여분이 있을 경우 민법 1008조의 2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인 1억 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기여자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의 상속 지분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법리에서 본 약의 추정은 번복되고

피고의 선의는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별지